

# 예산총칙

202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782,792,738	53,483,782
일반회계	1,622,813,636	48,684,409
특별회계	159,979,102	4,799,373
공기업특별회계	138,533,065	4,155,99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2,151,766	2,164,553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6,381,299	1,991,439
기타특별회계	21,446,037	643,381
주택사업특별회계	2,920,039	87,601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391,218	161,737
농공단지특별회계	473,855	14,216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30,441	91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41,900	43,2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83,920	197,518
수질개선특별회계	1,493,114	44,793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871,940	26,15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4,736	142
도시개발특별회계	1,126,101	33,783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1,108,773	33,26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83,01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2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3,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